



상속인 제출서류

[소액 상속보험금 지급 간소화] 피상속인의 상속보험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상속인 간 분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재불명, 이민·해외체류, 입원치료 등으로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의 위임장 제출을 생략하고, 유선이나 모바일을 통한 위임 확인, 대표 상속인의 변제무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속인 유형 등에 따라 제출서류 및 지급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44-2792)로 사전문의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	징구서류	징구목적	비고
필수	공동	대표(위임받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신분증 앞면 사본
	공동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범위 ¹⁾ 확인	
	위임하는 상속인	위임장 ²⁾ 및 인감증명서 등 ³⁾	위임하는 상속인의 의사 확인	
필요시 청구	공동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⁴⁾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① 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정확한 상속인 범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기본증명서를 통해 사망사실·시기 확인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의 범위 확인	중혼 여부, 사고 발생일 기준 혼인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언 상속	수유자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 증서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유증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미성년자 상속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 관계서류 제출 필요
	피성년 후견인 등 상속인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해외 거주자 상속인	실명확인증표(여권사본 등), 위임장(영사확인 또는 공증) ⁵⁾	대리관계 및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인증명서 등 징구
		해외거주사실증명서	해외거주 사실 확인	해외거주사실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징구 가능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상속내역 확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세기본법」 §82⑥)
	협의분할	재산분할협의서(공증) 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재산분할 내용 확인	협의분할 등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상속포기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판결내용 확인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수감기관 수감상속인	위임장 및 수감기관 발행 수감증명서	수감 사실 확인	위임장의 경우 수감자인 상속인 본인의 자필서명, 무인 날인 및 입회한 교도관의 확인(서명날인 등) 필요

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기재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중 택1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필수로 징구하지 않도록 유의
 5)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